

●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-71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7월 06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서○민 등 4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6.07.06. ~ 2026.07.20.(공고일로부터 14일)
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 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(☎ 02-6735-8129 / 팩스: 02-6735-8144 / E-mail: jhjuc301@korea.kr)

행정처분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	고지주소	법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납부기한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서○민	2002.07.26.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**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4항, 6항	7,500,000	2026.07.27.	010-****-7098	강의홍보
2	서○름	1991.12.05.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**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3,750,000	2026.08.21.	1866-****	부동산
3	이○재	1999.01.26.	경기도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**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4항, 6항	3,750,000	2026.08.21.	010-****-9990	부동산
4	유○현	2000.09.16.	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**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4항	7,500,000	2026.08.21.	02-****-5337	교육홍보